

원격수업운영규정

전부개정: 2023.02.15

개정: 2023.09.01

개정: 2023.10.16

개정: 2024.03.0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원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정규 교과과정으로 개설된 원격수업 강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대학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증진하여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높이고 학습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원격수업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원격수업”이란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교수-학습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한다.
2. “원격수업 교과목”이란 LMS 또는 화상강의시스템(메타버스 등)을 활용하여 강의 콘텐츠와 다양한 학습활동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직무수행능력평가(중간·기말시험) 등을 제외한 교수-학습 활동의 70% 이상이 원격수업으로 이루어지는 교과목을 말한다.
3. “강의콘텐츠”란 원격수업에 사용하는 멀티미디어 강의 교안을 말한다.
4. “교수-학습 활동”이란 직접적인 설명(또는 강의), 학습자의 질의 및 응답, 학습자의 과제물 제출, 교수자의 피드백 활동, 토론 등을 말한다.

② 제1항제2호의 “원격수업 교과목”의 내용과 그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실시간 원격수업”이란 인터넷 등 화상연결이 가능한 정보통신 매체를 통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수업을 말한다.
2. “비실시간 원격수업”이란 교수자가 제작한 강의콘텐츠를 LMS(Learning Management System)에 탑재한 후 학습자가 지정된 기간 내 시청하고 학습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을 말한다.
3. “블렌디드 러닝(Blended Learning)”이란 온라인 학습활동과 강의실 학습활동을 병행하여 운영되는 혼합형 강좌를 말하며, 해당 교과목의 강의콘텐츠에 대해 7주차 분 이상을 사전에 개발하여 운영하는 강좌를 말한다.
4. “플립 러닝(Flipped Learning)”이란 온라인 선행학습 후 강의실에서는 토론, 프로젝트 등 활동 중심 학습활동이 이루어지는 강좌를 말하며, 온라인 강의는 선행학습을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, 해당 교과목의 강의콘텐츠에 대해 5주차 분 이상을 사전에 개발하여 운영하는 보조 강좌를 말한다.
5. “K-MOOC”이란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대학교가 제작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관리·감독을 받는 온라인 공개강좌를 말하며, 교수자의 강의계획안, 수업 운영 방식 등에 따라 온라인 강좌, 블렌디드 강좌에 포함될 수 있다.

6. “재난대응 원격수업”이란 감염병과 같은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 총장이 정책적으로 학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는 수업을 말한다.
7. “학점교류 원격수업”이란 본 대학교의 교류대학으로 협약된 대학(이하 “교류대학”이라 한다) 또는 본 대학교가 참여하는 대학 등의 연합체에서 개설한 원격수업을 말한다.
8. “군복무 학점인정 원격수업”이란 의무 군복무 휴학으로 인해 학업이 단절된 학생이 수강하는 원격수업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① 이 규정은 본 대학교 개설강좌의 원격수업뿐만 아니라 국내·외의 교류대학을 통한 학점에도 적용한다.

②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 원격수업에 관한 운영기준은 교육부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기준, 대학 간 협약에 따른 온라인 강의 및 대학, 공공기관 등의 학점교류 교과목 운영 등 각 해당 원격수업 기준에 따른다.

제4조(담당 부서) ①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교무처 교무팀이 주관한다. <개정 2023.10.16.>

② 원격수업을 위한 강의콘텐츠 제작·지원, LMS 운영과 관리 및 교수자 교육 등은 교수학습혁신센터에서 주관한다.

제5조(원격수업운영위원회의 설치) 원격수업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구·심의하기 위하여 원격수업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6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교수학습혁신센터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9인 이내로 구성하고,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위원회에는 본 대학교 재학생 3인을 포함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본 대학교 원격수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·심의한다.

1.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,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원격수업의 발전적 방안 모색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
3. 원격수업의 운영과 질 관리(평가 포함)에 관한 사항
4. 기타 원격수업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

제8조(위원회 회의)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,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, 출

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대상 교과목) ① 본 대학교의 소속 교원은 교육과정에 따라 개설되는 전 교과목(교양·교직 및 전공과목)을 대상으로 원격수업 교과목을 개설 할 수 있다.

제10조(교과목의 개설 및 운영) ① 교과목 개설의 경우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(교양·교직·전공과목)을 대상으로 개설할 수 있으며 원격수업 교과목을 개설할 경우에는 원격수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대학 간 협약에 의해 타 대학에서 개설한 원격수업의 경우에는 협약서에 따른다. <개정 2023.09.01., 2024.03.01.>

② 원격수업 교과목은 매 학기 교수별 9시수까지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23.09.01., 2024.03.01.>

③ 대면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하는 경우 교과목별 3개 주차까지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23.09.01.>

④ 동일교과목의 경우 운영방법을 동일하게 운영한다.

⑤ 원격수업 교과목의 폐강기준은 매학기 총장의 결재를 득한 『수업운영지침』을 따르며 원격수업은 원칙적으로 분반을 허용하지 않는다. 다만, 불가피한 사유로 분반을 운영해야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 <신설 2024.03.01.>

제10조의2(외국인 전담학과 등의 교과목 개설 및 운영) 외국인 전담학과 및 야간과정 운영학과 등과 같이 학사운영이 구분되어야 하는 학과의 경우에는,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교과목 개설 및 운영에 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3.09.01.]

제11조(출석인정 및 성적평가) ① 출석인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1. 실시간 원격수업 : 대면수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강생의 출석 여부를 확인·관리
2. 비실시간 원격수업 : 수강생은 차시별 강의콘텐츠를 지정한 수강기간 내에 수강하여야 해당 차시 출석으로 인정

② 성적평가(직무수행능력평가 등)의 경우 실시간, 비실시간 원격수업 모두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, 다음 각 호에 한하여 비대면 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.

1. 교류대학 등으로 지정된 대학에서 제공하는 원격수업을 수강하는 경우
2. 「고등교육법」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군 복무 중 원격수업을 수강하는 경우
3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

③ 제2항에 따른 비대면 평가를 실시할 경우, LMS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평가 시작 시간, 종료시간 등 주의사항을 학습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03.01.>

제12조(강의평가) ① 매학기 2회 원격수업에 대한 강의평가를 실시하고, 모든 강의평가 결과는 교원에게 공개하고 최종 강의평가 결과는 학생에게 공개한다.

② 해당학기의 최종 강의평가 결과, 일정수준 이하인 교원이 발생한 경우, 위원회는 해당 교원에게 원격수업 교과목 개선을 위한 교육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해당 교원이 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, 위원회는 해당 교원의 원격수업 교과목 개선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13조(수업시수 인정) 원격수업의 수업시수는 대면수업과 동일하게 적용한다.

제14조(강의콘텐츠의 구성) ① 차시 당 원격수업 강의 콘텐츠 진행(재생) 시간은 다음과 같다.

1. 실시간 원격수업 : 1차시 당 실시간 강의 진행(재생) 시간은 50분 이상으로 출석수업과 동일하게 적용

2. 비실시간 원격수업 : LMS를 이용하여 1차시 당 콘텐츠 진행(재생) 시간은 25분 이상 제작하여 탑재하되, 콘텐츠 진행(재생) 시간과 질의응답, 온라인 토론 등의 교수학습 활동을 포함 1차시 당 총 학습 시간이 50분 이상이 되도록 구성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 등에서 제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수업의 경우 총장 승인을 얻어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.

제15조(강의콘텐츠 제작 및 등록) ① 원격수업을 위한 강의 콘텐츠는 해당 교원이 직접 제작함을 원칙으로 하며 교과목의 운영 및 강의 콘텐츠 관리는 해당 교원이 담당한다. 다만,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.

② 본 대학교 팀티칭 교과목의 강의콘텐츠를 공동으로 제작할 경우 또는 타 대학 등과 협약을 통하여 강의콘텐츠를 공동으로 개발할 경우에는 복수의 교원이 공동으로 제작할 수 있다.

③ 교수자는 LMS에 외부인의 강의 콘텐츠를 단순히 링크 등록(탑재)하여 학습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해당 교과목의 해당차시 강의 콘텐츠로 대체할 수 없으며 직접 제작하지 않은 외부콘텐츠를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격수업 콘텐츠로 사용할 수 있다. <개정 2024.03.01.>

④ 비실시간 원격수업의 경우 교수자는 강의 콘텐츠를 매 수업시간 전까지 LMS에 등록(탑재)하고 토론, 퀴즈, 과제제출 등을 진행함에 있어 학습자들의 질의에 응답하여야 한다.

제16조(강의콘텐츠의 제작 지원) ① 대학은 원격수업의 콘텐츠 개발 및 제작을 위해 시설, 기자재를 지원할 수 있으며 개발·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수학습혁신센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작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7조(강의콘텐츠의 사용기간 등) ① 제작된 강의콘텐츠의 사용 기간은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3년이 경과된 콘텐츠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 후 유지·수정·보완·재제작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서 정한 조치의 권고를 받은 부서 및 교원은 위원회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해당 콘텐츠의 수정, 보완, 재제작 등을 완료하여야 한다.

③ 위원회는 통상적인 사회규범, 인권 등에 해(害)를 끼치는 내용이 포함된 콘텐츠에 대하여는 심의를 거쳐 LMS 탑재를 제한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는 내용에 문제가 있는 콘텐츠에 대하여는 심의를 거쳐 교무처 교무팀에 보고할 수 있다. <개정 2023.10.16.>

제18조(저작권 및 정보보호) ① 교수학습혁신센터의 지원으로 제작된 콘텐츠의 저작권은 담당교원과 대학에 있다.

② 강의 콘텐츠 제작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은 「저작권법」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을 따른다.

③ 교수학습혁신센터 지원으로 제작된 콘텐츠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전에 교수학습혁신센터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④ 교원이 제작한 강의콘텐츠는 지식 재산권 관련 법령 및 기타 유관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, 저작권 문제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은 교원에게 있다.

⑤ 원격수업의 교수자 및 학습자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『개인정보보호법』을 따르며 원격수업운영을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교육활동 목적 이외에 사용 할 수 없다. <개정 2024.03.01.>

제19조(학습자의 준법 의무) 학습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저작권 또는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
1. 교수자의 사전 승인 없이 강의를 녹화하여 보관하는 행위
2. 수업 영상이나 수업을 위해 제공된 자료를 제3자에게 송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
3. 원격수업 중 교수자 또는 학습자의 이미지나 영상을 캡처하여 보관하는 행위 및 캡처한 이미지나 영상을 제3자에게 송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
4. LMS 아이디, 비밀번호 또는 실시간 화상강의 주소, 아이디, 비밀번호를 해당 교과목에 수강등록하지 않은 제3자에게 알려주는 행위

제20조(재난발생에 따른 원격수업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, 이 규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재난대응 원격수업으로 전환·운영하며, 수업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)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2023년 3월 1일 이후 운영될 목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콘텐츠에 관하여는 이 규정을 소급 적용한다.
- ② (경과규정) 이 규정 시행 이전 ‘원격수업 개발 및 운영규정’에 의해 유효하게 시행된 원격수업은 이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.

부 칙

- ① (시행)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2023년 8월 28일 이후 운영될 목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콘텐츠에 관하여는 학기개시일인 2023년 8월 28일로 소급 적용한다.
- ② (경과조치) 본 규정의 시행은 학기개시일인 8월 28일로 소급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)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2024년 3월 1일 이후 운영될 목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콘텐츠에 관하여는 이 규정을 소급적용한다.
- ② (경과규정) 이 규정 시행 이전 ‘원격수업운영규정’에 의해 유효하게 시행된 원격수업은 이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.